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9일, 조승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승환의원)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75조의3제1항)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된 산업의 침체, 대규모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 축소, 폐업 등으로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기업 차원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 공급망이 변화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①위기지역에 위치, ②특정 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업종전환 승인)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감면 실적)를 높

이기 위해서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 제75조의5)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경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1항의 일몰기한은 2025년이므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025년까지 감면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